

2021 「미술주간」 연계 프로그램 운영 공모 요강

문화체육관광부와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는 2021 미술주간 사업을 통해 범 미술계 및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미술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획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공모합니다. 동 사업에 참여할 미술 관련 협·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공모개요 ■ 공모명 : 2021 미술주간 연계 프로그램 운영

미술주간은 2015년 1회를 시작으로 전국 7개 권역, 국내 300여 개의 국·공·사립미술관, 화랑, 비영리 전시공간 등과 함께 전시 관람 혜택,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미술행사를 연계 진행하여 국민이 일상 속 미술을 향유할 수 있는 국내 최대 미술행사

※ 2021 미술주간 : 10. 7.(목) ~ 10. 17.(일), 11일

■ 공모기간 : 2021. 4. 5.(월) ~ 5. 24.(월) 18:00

■ 사업목적

- 미술주간 내 다양한 미술 관련 향유 및 교육 프로그램들을 지원함으로써 미술로 소통하는 분위기 조성하고 미술문화 향유자 및 생산자 발굴·확대
- 지역 내 다양한 전시공간 활성화 및 미술주간 내 프로그램 다각화 기대

공모내용 ■ 사업기간 : 2021. 7월 ~ 11월

※ 프로그램 운영기간 : 2021. 10. 7. ~ 10. 17. 내 운영, 구체적인 일정 및 회차는 신청 단체에서 결정 가능 (추후 일정 조정 협의)

- 운영기간 내 원하는 일정 및 장소에서 추진 가능

■ 신청자격

- 공·사립미술관, 비엔날레, 아트페어, 갤러리 및 기타 전시 관련 공간
- 미술 관련 사업 및 교육을 운영하는 단체 및 기관
 - ※ 개인은 신청 불가하며, 단체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제출 필수
 - ※ 부정수급, 중복수급 및 기타 국고보조금 수령 절차에 문제가 있을 시 신청이 불가하며 선정 이후에라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
■ 지원내용

- 미술주간 기간 내 미술문화 향유 증진 및 미술품 소비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(예 : 전시연계 체험/교육, 작가/큐레이터와의 만남, 작품 구매가이드 등)
-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직접 경비 지원 (예 : 기획비, 작품운송, 설치, 보험비, 강사비 등)

- 지원 신청할 수 없는 항목

- 단체운영 목적의 자산취득비, 시설비, 수선비, 시설부대비, 전화설비 등 자본적 경비
- 상근인력 인건비, 사무실 임차료,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, 공과금,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
- 단체 대표자 혹은 지원사업자 본인에게 집행되는 인건비성 사례비
- 기타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

■ 지원규모 : 총 1.45억원 이내, 22건 내외 선정

- ① 자율형 : 20건 내외 (지원금 건당 400만원~700만원, 총 1.15억원 내 차등 지원)
- ② 장르특화형 : 1~2건, 3천만원 내 지원

공모유형

① 자율형

■ 기획방향 (*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 포함하여 기획)

향유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미술 교육, 야간 행사, 문화예술 공연 등 미술관, 갤러리 등 내에서 체험하는 특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 · 작가 스튜디오 방문 및 레지던시(창작공간) 오픈 등 작가들과의 협력 · 미술 계열 전공 및 관련 직군 등에 대한 진로 교육 및 멘토링
소비 촉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미술품 구매 가이드를 위한 교육 및 이벤트 · 미술품 구매가 가능한 전시공간 투어 · 구매 촉진을 위한 네트워킹 행사 및 작가와의 만남

* 단체 역량과 프로그램 내용 및 방법론의 적절성이 드러나는 프로그램으로 기획·구성

■ 운영방식 (* 아래 세 개의 선택사항 중 택 1)

- 온·오프라인 프로그램 오프라인 프로그램 온라인 프로그램

■ 필수 이행사항

- ① 미술주간 기간 내 프로그램 운영일에 무료 운영
- ② 미술주간 기간 내 프로그램 운영일에 21시까지 야간 운영
 - * 인력비 보조금에서 책정 가능
 - * 온라인 프로그램만 운영 시 야간 운영 및 무료 운영 해당 없음
- ③ 프로그램 운영 최소 2주 전 온라인 사전 모객 및 참가신청 실시
- ④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 확보
- ⑤ 프로그램 참여 연령별/직업별 타깃을 구체적으로 설정 후 홍보 및 마케팅, 모객 방안 제시
- ⑥ 선정 단체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쾌적한 공간 확보와 충실한 자료 제공
 - * 프로그램 운영 내용을 기록 및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 주관 홍보 활용에 동의하여야 함
 - *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진행

② 장르특화형

■ 기획 장르 : 사진

- 특정 미술 장르에 대한 인식 전환 및 향유 기획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전시 기획
- 매년 미술 장르 중 1개를 선정, 해당 장르와 관련된 다채로운 행사 운영

■ 필수 이행사항

- ① 해당 장르에 관한 세미나/토론회 1회, 리셉션 1회, 관객 참여 이벤트 1회 진행
- ② 해당 장르에 관련한 전시 연계, 교육 및 체험 행사 2회 이상 진행
 - 미술주간 기간 내 프로그램 운영일에 무료 운영
 - 미술주간 기간 내 프로그램 운영일에 21시까지 야간 운영 (* 인력비 보조금에서 책정 가능)
 - 프로그램 운영 최소 2주 전 온라인 사전 모객 및 참가신청 실시
- ③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 확보 필수 (* 작가 참여 필수)

- ④ 프로그램 참여 연령별/직업별 타깃을 구체적으로 설정 후 홍보 및 마케팅, 모객 방안 제시
- ⑤ 선정 단체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쾌적한 공간 확보와 충실한 자료 제공
 - ※ 프로그램 운영 내용을 기록 및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 주관 홍보 활용에 동의
 - ※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진행

**심의시
우대사항**

- 온라인 및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동시 운영하는 단체
- **미술주간 기간 전일 동안 무료 운영 및 야간 운영이 가능한 단체**
- 미술주간 취지 및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독창적인 프로그램
- 문화예술 유관기관(학교, 관련 단체, 전시공간, 공공·민간 기관 등)과 연계하여 향유 파급력이 큰 프로그램
- 운영 일수 혹은 회차가 많아 프로그램 수혜자를 다수 확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
- 문화소외계층 및 소외지역 대상 운영 프로그램
- 과거 유사 사업 실적이 있는 단체

**선정단체
의무사항**

- 미술주간 및 선정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활동 필수
 - 모든 온·오프라인 홍보 및 인쇄물(홈페이지 포함)에 문화체육관광부,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, 「미술주간」 사업 B 삽입 및 센터와 협의 후 제작
 - 미술주간 홍보물(현장 스탠드 배너 등) 제작 및 부착 필수 (※ 공식 홍보물 디자인 파일은 추후 센터에서 제공 예정)
- 미술주간 공식 웹사이트, SNS 운영 및 홍보 관련 협조
- 사업 운영 전 교육 및 평가 워크숍 참석
- 매년 '시각예술실태조사(미술시장실태조사)' 응답 필수
-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의무 교육 참석 및 서약서 서명 필수
-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정산 및 실적 보고서 제출 (※ 센터 제공 지정 서식 준용하여 작성)
 - 프로그램 현장 운영 스케치 사진 첨부 필수
 - 보조금 정산 시 반드시 센터에서 지정한 회계 법인을 이용하여 회계검사 받은 후 정산보고서 제출 (※ 회계검사 수수료는 3천만 원 미만 282,000원, 3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336,000원 수수료 발생)
 - e나라도움 상 정산 및 실적보고, 정보공시 등 성실 이행
 - 프로그램 참여자 수 집계 및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 응답 필수

**공모신청
기간 및 접수**

- **접수기간** : 공고일 ~ **2021. 5. 24.(월), 18:00**
 ※ **2021. 5. 24.(월), 18:00까지** 'e나라도움' 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하며 18:00시 이후에는 입력이 불가함
- **접수방법** :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'e나라도움(www.gosims.go.kr)' 을 통해 신청 접수
 - ※ 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 : 1670-9595
 - ※ e나라도움 이용 시 회원가입 필수, 공인인증서 필요
 - ※ **우편, 방문, 이메일 접수 불가**
- **제출서류 및 방법**
 - 지원신청서 제목 : **2021미술주간_공모유형명_단체명**

no	작성/제출서류	제출방법
1	[필수] e나라도움 지원신청서 1부 ※ e나라도움 상 예산집행계획은 추후 선정된 단체에 한해 작성함	e나라도움에서 작성

2	[필수] 공모지원신청서 1부(지정서식/한글파일)	e나라도움에서 첨부 제출
3	증빙서류 ① [필수] 협회/단체 증빙서류 1부 * 사업자등록증, 고유번호증 스캔사본 중 택일(pdf 파일) * 미술관의 경우, 미술관등록증 첨부 ② [선택] 과거 유사사업 실행 증명 및 단체 활동 포트폴리오 * 심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추가자료	e나라도움에서 첨부 제출
4	PT 자료	서류심의 이후, 인터뷰 심의 대상에 한하여 제출

**심의일정
및 방법**

- **심의방법** : 센터 지원심의 운영내규에 따라 구성된 외부 심의위원 후보단을 기반으로 각 심의 시 외부 전문가 3명씩 선정하여 서류 및 면접심의 진행

■ **심의일정**

구분	일정	방법
접수기간	공고일 ~ 5. 24.(월), 18:00	e나라도움 접수
서류·면접 심의 및 발표	2021. 6월 1주 ~ 6월 3주 중	전문가 심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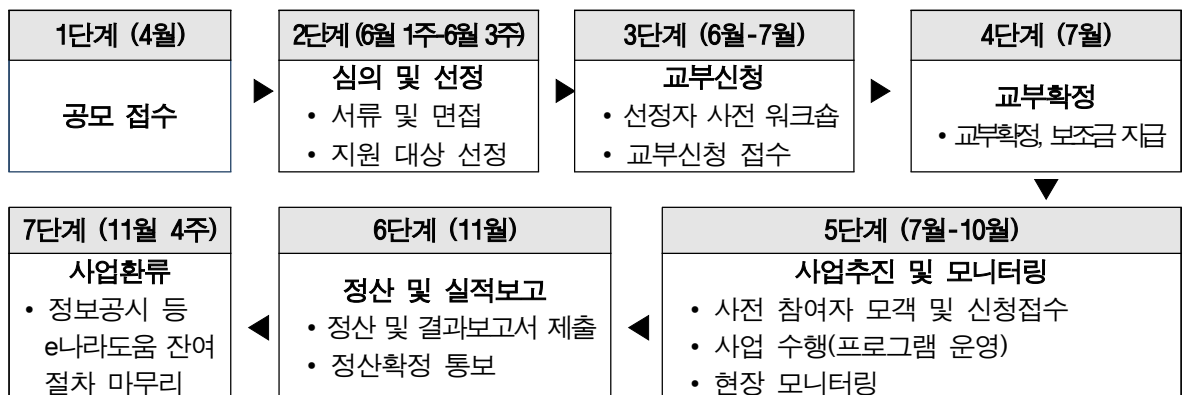
※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※ 결과발표는 e나라도움 및 센터 홈페이지 공고 (선정단체에 개별 연락)

■ **심의기준**

심의지표	착안사항	배점
기획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목적(사업취지)의 이해도 및 부합성 ■ 구체적인 참여 대상 설정 및 지역적 특성 반영 ■ 사업내용의 참신성 및 차별성 ■ 미술주간 및 사업 홍보, 참여자 모객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방법 	30
실행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 운영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■ 사업 예산운용 계획의 현실성 ■ 사업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 및 업무 배분 ■ 신청단체의 이전 활동 실적 및 성과 	40
사업성과 기대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미술 향유자 발굴 성과 기대도 ■ 온·오프라인 프로그램 동시 운영 등으로 향유 기회 확대 ■ 문화소외계층(지역) 대상 운영을 통한 향유 기회 확대 ■ 지역 예술가/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지역 내 파급력 	30
총 계		100

추진절차



※ 선정단체는 사전 워크숍 참여 필수 및 보조금 세부지침 반영하여 교부신청

※ 교부금 지급은 실제 프로그램 운영 3개월 전부터 지급 가능

유의사항

- 접수 기간 이후에는 지원신청서 및 자료를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없음
 - 지원서 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및 개인정보 고지 확인란 작성 필수
 - 지원서 작성 후 날인 혹은 사인 후 제출 필수
 - 지원서 작성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 신청자의 책임임
 -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지원신청 예산의 산출 근거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
 - 명확한 산출 근거가 없는 예산 측정은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 - 지원신청 예산 내 '회계검사 수수료' 책정 필수
- 교부 확정 이후 사업 기간 내 집행한 금액만 인정
 - 교부신청은 행사 시작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가능
 - 사전 및 사후 집행은 환수 조치됨
 - 2017년부터 국고보조금(지원금) 집행은 e나라도움(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, www.gosims.go.kr) 내에서만 가능
- 지원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또는 과거 수행했던 지원 사업의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이 적발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며 선정이 확정되었다더라도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
- 신청 사업내용 불이행 시 또는 선정 후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할 경우 지원금은 환수 조치됨
 - ※ 「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」에 따른 지원금 집행 준수
(예시 : 지원금 지급을 위한 신규통장 개설 필수, 지원금과 자부담 사용 혼용 금지, 타(대표 명의 포함) 통장으로 지원금 이체 금지, 지원금 현금 인출 금지, 사업 수행 후 정산 확정 전 지원금 통장 해지 금지 등)
-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지침에 따라 사업 변경, 축소 및 취소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예술경영지원센터의 '코로나19 대응 지침'에 근거하여 기·미집행 보조금 인정범위가 결정될 수 있음
-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「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」(2021.1.5.) 제10조에 따라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 제 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및 「남녀공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의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. 또한 보조사업자는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(프린랜서 포함)에 대해 성희롱·성폭력 방지 조치(서약서 및 교육 이수 확인서 제출)를 해야함
-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따라 지원사업 수행시 예술인(기획자 포함)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예술 활동을 제공받는 경우 피고용한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필수. 보험료 납부 의무 불이행시 「예술인 복지법」 제6조의2 제1항의 '불공정행위'에 해당되며 추후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

☞ '문화예술용역' 이란? 특정 문화예술 결과물의 완성을 위하여 예술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일정 기간 받는 창작·실연·기술지원 등의 노무를 뜻하는 것으로, 고용·도급·업무위탁·파견 등 그 형태를 막론하고 모두 문화예술용역에 포함

<e나라도움 신청 및 접수관련 유의사항>

- 해당 사업은 신청서 접수, 사업자 선정, 예산 교부 등 사업의 모든 절차를 <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'e나라도움' >을 통해 진행됨
- 접수 마감 당일 지원자 접수 폭주에 따른 오류 발생 등으로 e나라도움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1일 전 사업신청서 제출완료 바람 (**※ 마감 후 사업신청서 제출 불가**)
 - 회원가입 및 신청서 작성 시 'e나라도움 시스템' 에서 온라인 검증하는 항목이 다수 포함되어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 다음 절차로 진행이 어려운 점 유의 바람
-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는 e나라도움을 운영·관리하지 않는 단순 이용기관으로, 시스템 장애 등 시스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대응이 불가함
- 'e나라도움 시스템' 사용문의, 장애신고 등은 '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(1670-9595)' 및 시스템 내 [물고답하기], [오류신고] 등을 이용하기 바람

지원문의

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예술유통팀

02-2098-2930, koreaartweek@gokams.or.kr
